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8
----------	-----

2023년 4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8일, 김춘곤 의원(찬성자: 27명)
-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크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포 소각장 추가 설치’,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에서의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음.
- 본 조례의 물재생센터 주민편의시설 지역주민 감면율 40%는 피해를 보는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2014년 1월부터 적용하였으나, 물재생센터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호소 및 감면율 확대 요구는 지속되고 있음.

- 물재생센터 지역주민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3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의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 감면율 “40%”를 “80%”로 함. (별표 3)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물재생시설 조례”）」 제5조의2제3항¹⁾ 및 [별표 3]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물재생시설 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별표 3]
1. 체육시설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u>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u> 로 하되 나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가. ----- <u>지역주민의 감면율은 80%</u>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주차시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u>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u> 로 하되 나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가. ----- <u>지역주민의 감면율은 80%</u>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주민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
 4.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준수차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시설 이용자
- ④ - ⑥ (생략)

■ 지역주민 물재생시설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현황

- 현행 「물재생시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편익시설은 [표 2]와 같음. 이 중 대부분의 편익시설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서남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14면)과 파크골프장(9홀), 탄천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주차장(125면)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음.

[표 2]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별 편익시설 현황

센터명	규모(㎡)	체육시설 현황	비고
중랑물재생센터	3,600	- 축구장 1면	-
	560	- 실내 배드민턴장 4면	-
	860	- 풋살장 1면	-
	1,108	- 족구장 2면	-
	1,209	- 테니스장 2면	-
난지물재생센터	496	- 테니스장 4면	-
	660	- 다목적구장(족구장1면,농구장1면)	-
	6,400	- 축구장 1면	-
탄천물재생센터	629	- 게이트볼장 1면	북개공원 1단계
	437	- 배드민턴장 2면	
	1,289	-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1,320	- 농구장 2면	마루공원
	2,004	- 족구장 2면	
	2,253	- 풋살장 2면	
	2,367	- 테니스장 3면	
	3,850	- 주차장 125면	
	2,070	- 족구장 2면	에코파크
	1,568	- 풋살장 1면	
9,800	- 축구장 1면	탄천센터 내부	
1,232	- 테니스장 2면		
서남물재생센터	12,700	- 테니스장 14면	-
	144	- 실내탁구장 4면	-
	12,210	- 파크골프장 9홀	-
	5,589	- 축구장 1면	-

-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주변영향지역²⁾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³⁾으로 대부분의 편익시설에 대해 무료 개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공정 근무자 외에 별도의 운영인력이 배치된 일부 시설⁴⁾에 대해서는 관리비 확보 차원에서 일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및 탄천물재생센터 주차시설에 대한 최근 2년간 지역주민 사용료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약 4,300만 원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별 편익시설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총징수액	감면 전 지역주민 징수액	감면액	감면 후 지역주민 징수액	총징수액	감면 전 지역주민 징수액	감면액	감면 후 지역주민 징수액	
합계	152,546	98,355	39,342	59,013	286,160	114,993	45,997	68,996	
서남	테니스장	90,804	28,102	11,241	16,861	193,931	44,260	17,704	26,556
	파크골프장	5,367	798	319	479	40,197	30,598	12,239	18,359
탄천	주차장	56,375	70,192	28,077	42,115	52,032	63,948	25,579	38,369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6. (생략)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하거나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4) - 서남센터 체육시설 : 관리인력 7명

- 탄천센터 마루공원 주차장 : 관리인력 3명

■ 개정안 검토의견

- 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40% 감면 규정을 8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를 통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이용률 제고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공감할만하다 하겠음.
- 또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붙임 1〕 참조)를 살펴보면, 감면을 확대에 따른 세입 손실액은 기존(40% 감면율) 대비 연평균 약 5,600만원이 늘어난 약 9,9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 2023년 기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가 약 8,86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 역시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역주민의 경우 현행 「물재생시설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이 정한 기본 감면율 40%를 적용받으면서 여기에 추가하여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감면율 규정에 해당 시 감면이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감면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감면율을 중복하여 적용받게 되면 체육시설은 최대 90%, 주차장은 최대 96%까지 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지게 됨.
- 따라서 이처럼 실질적 감면율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 서울

시는 편익시설의 원활한 관리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주민 감면율을 개정안의 80%에서 60% 수준으로 조정 ((붙임 3)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3. 「물재생시설 조례」 개정 전·후 사용료 비교 현황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문서번호

2023032200000006

미첨부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춘곤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03.22.

회신일 : 2022.03.31.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3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의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 감면율을 “40%”에서 “80%”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277,805천원(연평균 55,561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5,561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4~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손실분은 지역주민 징수액의 2/3 수준인 것으로 전제(서울시 담당 부서 의견 준용)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제공자료 준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277,805천원(연평균 55,56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손실분		△55,561	△55,561	△55,561	△55,561	△55,561	△277,805
	소계(a)		△55,561	△55,561	△55,561	△55,561	△55,561	△277,805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55,561	55,561	55,561	55,561	55,561	277,805

자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제공자료 준용

[붙임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별표 3] <개정 2021. 9. 30.>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주관하는 행사	100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8.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30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1.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비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붙임 3] 「물재생시설 조례」 개정 전·후 사용료 비교 현황

○ 서남센터 체육시설									
센터	구분		사용료 (원)	현행		개정안		서울시 의견	
				지역주민 (40%)	노인(50%) + 지역주민 (40%)	지역주민 (80%)	노인(50%)+ 지역주민 (80%)	지역주민 (60%)	노인(50%) + 지역주민 (60%)
총 감면율				40%	70%	80%	90%	60%	80%
서남	테니스장	평일 (1시간)	5,000	3,000	1,500	1,000	500	2,000	1,000
		공휴일 (1시간)	6,500	3,900	1,950	1,300	650	2,600	1,300
	테니스장 (전일)	평일	40,000	24,000	12,000	8,000	4,000	16,000	8,000
		공휴일	52,000	31,200	15,600	10,400	5,200	20,800	10,400
	탁구장	월 (2시간)	20,000	12,000	6,000	4,000	2,000	8,000	4,000
		일 (2시간)	3,000	1,800	900	600	300	1,200	600
	파크 골프장	(9홀)	3,000	1,800	900	600	300	1,200	600
	○ 탄천센터 마루공원 주차장								
센터	구분		사용료 (원)	현행		개정안		서울시 의견	
				지역주민 (40%)	노인(80%) + 지역주민 (40%)	지역주민 (80%)	노인(80%) + 지역주민 (80%)	지역주민 (60%)	노인(80%) + 지역주민 (60%)
총 감면율				40%	88%	80%	96%	60%	92%
탄천	주차장 (정기권)	전일	70,000	42,000	8,400	14,000	2,800	28,000	5,600
		주간	50,000	30,000	6,000	10,000	2,000	20,000	4,000
		야간	20,000	12,000	2,400	4,000	800	8,000	1,600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지역주민의 경우 현행 조례〔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이 정한 기본 감면율 40%를 적용받으면서 여기에 추가하여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감면율 규정에 해당 시 중복 감면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지역주민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체육시설은 최대 90%, 주차장은 최대 96%까지 감면율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 편익시설에 대한 별도 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감면율을 개정안의 80%에서 60%로 조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19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의안 번호	관련 598
----------	-----------

1. 수정이유

- 지역주민의 경우 현행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이 정한 기본 감면율 40%를 적용받으면서 여기에 추가하여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감면율 규정에 해당 시 중복감면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체육시설은 최대 90%, 주차장은 최대 96%까지 감면율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편익시설에 대한 별도 인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감면율을 개정안의 80%에서 60%로 조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의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의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 감면율 “80%”를 “60%”로 함.
(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지역주민의 감면률은 80%”를 “지역주민의 감면률은 60%”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u>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40%</u>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생략)</p> <p>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u>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40%</u>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생략)</p>	<p>[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 가. ----- <u>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80%</u> ----- ----- -----. 나. (현행과 같음)</p> <p>2. 주차시설 가. ----- <u>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80%</u> ----- ----- -----. 나.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 가. ----- <u>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60%</u> ----- ----- -----. 나. (현행과 같음)</p> <p>2. 주차시설 가. ----- <u>지역주민의 감면 율은 60%</u> ----- ----- -----. 나.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지역주민의 감면률은 40%”를 “지역주민의 감면률은 6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p> <p>가. 시장이 정하는 <u>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u>로 하 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p> <p>나. (생략)</p> <p>2. 주차시설</p> <p>가. 시장이 정하는 <u>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u>로 하 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p> <p>나. (생략)</p>	<p>[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p> <p>1. 체육시설</p> <p>가. ----- <u>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u> ----- -----.</p> <p>나. (현행과 같음)</p> <p>2. 주차시설</p> <p>가. ----- <u>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u> ----- -----.</p> <p>나. (현행과 같음)</p>